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 계약서

신청 암호모듈명 :

계약 당사자

시험기관: 한국인터넷진흥원장

신청인:

위 신청인의 암호모듈 시험을 위하여 시험기관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「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」(국정원, 2014. 4.)과 「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」(행정안전부 고시2004-45)에 따라 시험 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암호모듈 시험(이하, '시험'이라 한다)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기관과 신청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데 있다.

제2조(계약의 이행) 시험기관과 신청인은 암호모듈의 시험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장이 규정한 「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」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규정한 「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」 및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제출물 제출 및 반환) ① 신청인은 시험대상인 암호모듈의 안전성·구현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, 시험기관이 요청하는 원시프로그램및 하드웨어 설계도 등 제반문서 및 구현된 암호모듈을 제출하여야 한다.